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등
2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법률 제17343호, 2020. 6. 9., 제정, 2021. 1. 1.,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본사업의 관리

- 1) 연구기관 등은 기본사업의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,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의 개정)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기본사업의 관리)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기본사업(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)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
2. 연구개발과제의 선정
3. 연구개발과제의 협약
4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
5. 연구개발과제의 평가
6.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
7. 그 밖에 기본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사업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사업 관리규정 및 동 규정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2조(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」의 개정)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기본사업의 관리) 해양과학기술원은 기본사업(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)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
2. 연구개발과제의 선정
3. 연구개발과제의 협약
4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
5. 연구개발과제의 평가
6.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
7. 그 밖에 기본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기본사업의 관리) ① 연</u> <u>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기</u> <u>본사업(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</u> <u>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</u> <u>른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</u> <u>발사업을 말한다)을 수행하는</u> <u>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</u> <u>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</u> 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1.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</u> <u>모</u> <u>2. 연구개발과제의 선정</u> <u>3. 연구개발과제의 협약</u> <u>4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</u> <u>리</u> <u>5. 연구개발과제의 평가</u> <u>6.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</u> <u>단</u> <u>7. 그 밖에 기본사업 관리를 위</u> <u>해 필요한 사항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기본사업의 관리 등을 위하여</u>

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
사업 관리규정 및 동 규정에 따
라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
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
있다.
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기본사업의 관리)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기본사업(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)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1.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</u> <u>2. 연구개발과제의 선정</u> <u>3. 연구개발과제의 협약</u> <u>4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</u> <u>5. 연구개발과제의 평가</u> <u>6.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</u> <u>7. 그 밖에 기본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734